

목 차

1. 노인학대 정의
2. 노인학대 유형
3. 노인학대 신고방법
4. 사례진행도
5. 노인학대 관계법령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5세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
 -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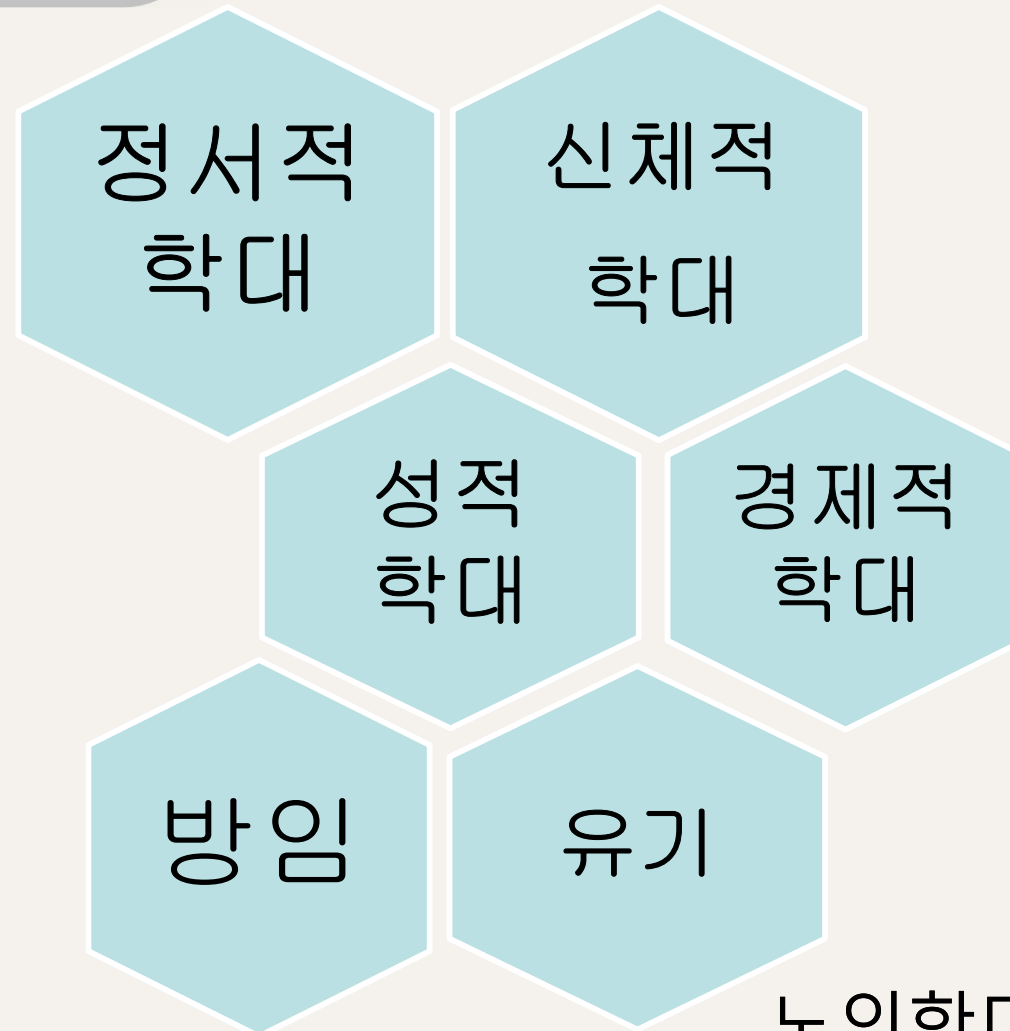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 유형을 말함.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의 유형

행태적 분류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의 유형

2) 언어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의 유형

3)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의 유형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의 유형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방치한다.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의 유형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2. 노인학대의 유형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3.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 ①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한 접수
- ②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③ 직접내방, 가정방문, 아동상담을 통한 대면접수(직접내방, 가정방문은 사전 전화 연락요망)
- ④ 서신에 의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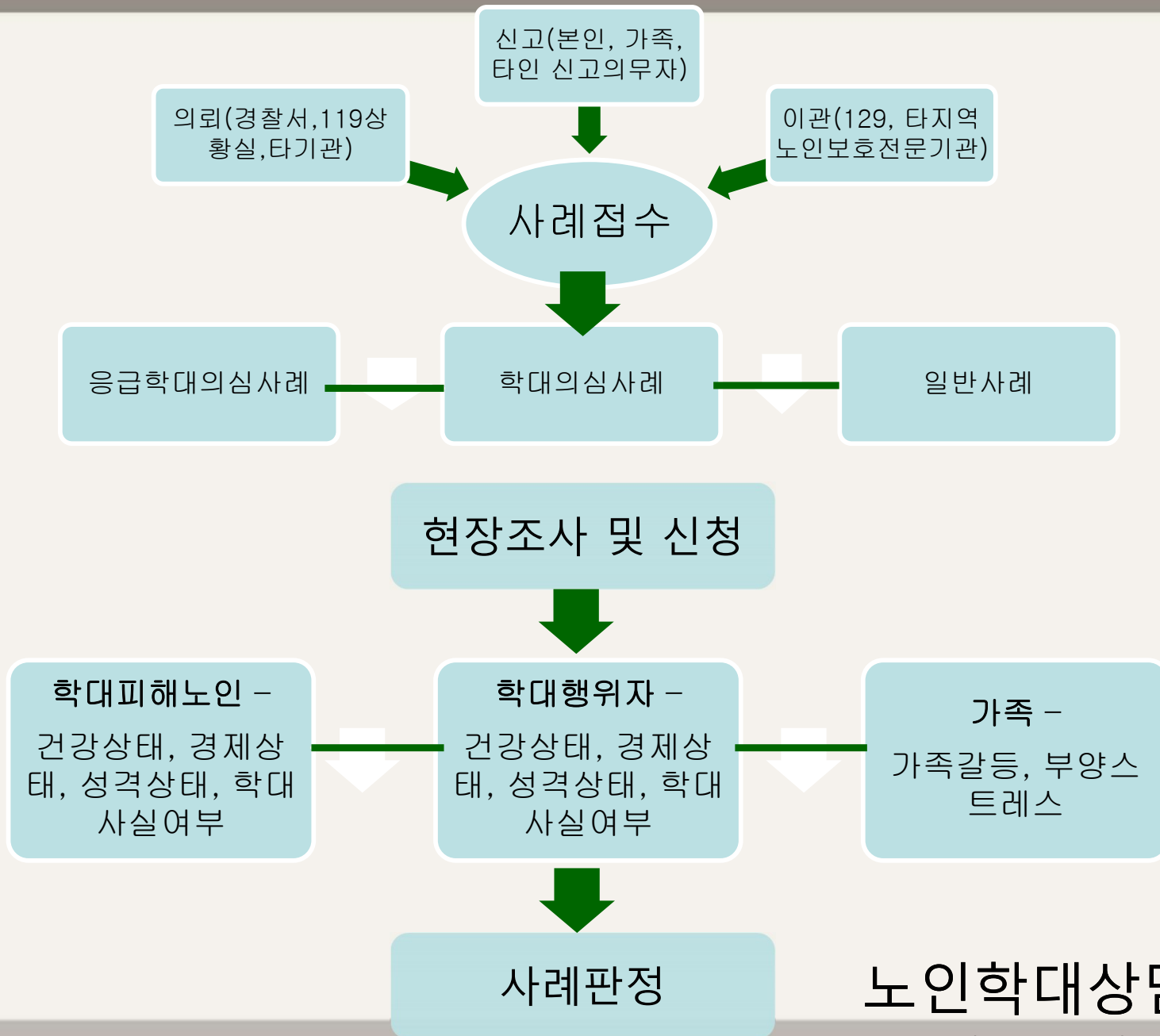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제39조의 6제2항)

-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②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③ 직사회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4. 사례진행도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5.노인학대 관련법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3개월	지정취소
2. 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3	업무정지5개월	업무정지7개월	지정취소
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1)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6개월	지정취소	
2)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지정취소

노인학대상담.신고
1577-1389

“어르신이 행복하면 모든세대가 행복합니다.”



끝까지 숙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